

2023년도 혁신시제품 등록 및 수요과제발굴 컨설팅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조달청에서 추진중인 『2023년 혁신시제품 지정 계획 공고』와 관련하여, 상용화 이전의 혁신 제품 기술을 보유한 도내 혁신기업을 발굴하여 혁신시제품 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8일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혁신시제품이란?

- ◆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 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제품+서비스) 중 혁신성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 ◆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3년)동안 수의계약 대상
단, 조달청 시범구매 대상여부는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 **혁신시제품 지정·구매란?** 혁신성 평가 등을 통해 혁신시제품을 지정하고, 지정된 제품의 테스트를 희망하는 수요기관에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제공하여 일정 기간 테스트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류, 성과를 확산하는 제도

□ 혁신시제품 지정

- 조달청장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간 동안 수의계약 구매 가능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
- 혁신시제품 지정관련 특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혁신성평가)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성평가' 면제
-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혁신장터(<http://ppi.g2b.go.kr>)' '혁신제품전용몰'에 등록

□ 관련규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사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다목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2021-29호)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고시 제2021-40호)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3년 혁신시제품 등록 및 수요과제발굴 컨설팅사업
- (사업기간) '2023. 1월 ~ '2023. 12월
- (사업목적) 2023년도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계획 공고와 관련하여 도내 혁신기업 발굴 및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사업규모) 기업당 3,500,000원 이내
- (사업내용) 혁신시제품 등록 및 지정을 위한 컨설팅 및 시험,인증 지원

지원 프로그램		지원규모	지원내용
필수	컨설팅 지원	3,500천원(18개사)	○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
선택	시험인증비	1,000천원(5개사)	○ 제안제품의 성능 측정하기 위한 시험분석 지원 ○ 제안 제품 관련 규격 및 인증 심사 지원

※ 조달 혁신시제품 등록을 위한 추가 시험인증 필요기업만 선택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선택 프로그램만 단독으로 신청은 불가하며 지원 여부는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름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기술개발단계(TRL)^① 7~9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②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최대 1년)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보유
- ① 기술개발단계(TRL)

기술개발단계(TRL)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공인) 존재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예시)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9단계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② 상용화 이전: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을 의미(원칙)

- 단,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 매출 또는 최초 매출이 혁신성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는 허용 ※ 근거자료는 신청기업이 제시

<유의 사항>

1.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 등으로 인해 상용화가 어려운 제품(제품+서비스 포함)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제안서 작성시 예상되는 규제요소와 극복방안을 명확하게 제시
2. 심사 및 지정 제외 안내(지정신청 제한)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 제1항
 - 신청 제품이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과 동일 제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
 - 동일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으로 4회 이상 혁신성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대기업·중견기업이 제안할 수 없음

□ 신청자격

- 제안제품(제품, 제품+서비스 포함)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제조 납품이 가능한 기업
 - 기술 보유기업은 생산시설 보유기업과 협업체로 참여 가능

<유의 사항>

- ① 등록원부의 등록권리자 확인
 -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② 공동권리자 또는 복수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 : 약정서(공고서 별첨 서식 활용) 제출
- ③ 특허(실용신안) 출원 중인 경우 신청 불가하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는 해당 기술이 특허(실용신안) 출원중이라 하더라도 '기술이전 업무협약서' 제출로 지정신청 가능. 단, 이 경우 혁신성 평가 대상에는 포함되나 계약심사협의회 심사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신청분야

-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한국판 뉴딜 2.0 분야 중 1가지 선택 후 상세항목에서 해당 항목 1개 신청 (중복신청 금지)

구분	상세 항목
1. 혁신성장 지원 분야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2. 국민생활문제 분야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3. 한국판뉴딜 2.0 분야	(디지털 뉴딜) ①D.N.A 생태계 ②비대면 인프라 ③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④SOC디지털화 (그린뉴딜) ⑤탄소중립 ⑥도시·공간·생활 인프라 ⑦저탄소·분산형 에너지 ⑧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 자세한 사항은 [참고]한국판 뉴딜 2.0(p25 ~p34.)참조

3 추진일정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신청 · 접수

(신청기간) 2022.12.28.(수) ~ 2023.01.11.(수)

(신청방법) 경남TP 홈페이지 신청

○ 경남TP 홈페이지(www.gntp.or.kr) ⇒ 지원사업 ⇒ 지원사업신청)

- 전산등록 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준비

※조달 혁신시제품 등록을 위한 추가 시험인증 필요기업만 선택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선택 프로그램만 단독으로 신청은 불가하며 지원 여부는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름

(문의처) 문희라 선임(☎ 055-259-3375, moon@gntp.or.kr)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제출부수
① [별첨 1호 양식] 혁신시제품 제안서	1부
② [별첨 2호 양식] 신청요건 체크리스트	1부
③ [별첨 3호 양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중복지원금지약약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각1부
⑤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 반드시 제안 제품에 적용된 해당 특허(실용신안)만 제출	1부
⑥ 재무자료: 최근 결산자료(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5 유의사항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과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이하 “우수조달 물품 등“이라 한다.)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세부 품명번호 동일)이라도 새로운 적용기술이 추가되거나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 지정 또는 계약 제품과 신청제품과의 특성을 비교한 기술 · 성능 비교표[별첨 6 서식]를 제출

선정평가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 및 과제신청서가 허위일 때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될 수 있음

과제 수행 및 종료 후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③ 접수 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 ④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제재를 받는 경우
- ⑤ 신청내용이 중앙정부 및 기업지원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미(既)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이 확정된 내용일 경우
- ⑥ 신청내용이 지원 기간 내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
- ⑦ 지원기간 중 경상남도 이외 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 ⑧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⑨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혁신 시제품 지정을 위한 관련 내용 등은 조달청 혁신장터 사이트 (<http://ppi.g2b.go.kr:8911>) 참고

- 별 첨 1. (필수양식) 혁신시제품 제안서 1부
2. (필수양식) 신청요건 체크리스트 1부
3. (필수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중복지원금지 협약서 1부
4. (필요시) 약정서 1부
5. (필요시) 협업승인신청서 1부
6. (필요시) 기술·성능 비교표 1부
7. (참고자료) 한국판뉴딜 2.0 1부 1부
8. (참고자료) 산업기술분류표 1부
9. (참고자료)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전문)_제2021-40호 1부. 끝.